

대전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134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은국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 전등기소 2020. 8. 3. 접수 제46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5. 16.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6%(변동금리), 변제기 2020. 5. 16.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C은 위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2022. 8. 18. 기준 39,781,034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남아있다.

다. 피고와 C은 부부였고, 2015. 5.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C은 202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을 증여하였고, 2020. 8.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다.

마. 피고와 C은 2020. 8. 3.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20. 11. 17.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소유권을 증여하기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기획과, 대전 동구청, D 신용정보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C은 2020. 7. 3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 외에도 대전 동구 E아파트 F호 등 4개의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더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그 부동산들의 매수 당시 가격 합계가 7억 4,400만 원이었으므로 2020. 7. 31. 무렵의 가치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당시 대출채무 등 소극재산 합계는 1억 원 미만이었고, 지방세 체납 내역도 없었으며, 신용등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이 C의 유일한 재산은 아니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양육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채무 등을 반영하더라도 재산처분행위 당시(2020. 7. 31.)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2020. 7. 31.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이 당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채무자인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동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1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전광역시 동구

대 50359.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50,359.1분의 45.65 이상.

